

수원지방법원 2015. 8. 27 선고 2015가단204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8. 18.

판결 선고 2015. 8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500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8. 1. 21. 접수 제18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재욱

별지